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하수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나. 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조문 정비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를 「하수도법」으로 변경
- “오수처리시설 등”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
- “분뇨 등 관련영업 및 정화조청소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변경

3. 관계법령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
- 하수도법(2008. 2. 29 법률 제8858호)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8. 2. 28 ~ 2008. 3. 19)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8. 3. 27)

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라.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하여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2조중 제목 “분뇨 및 축산폐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로 하고, “분뇨 및 축산폐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로 하며, 적정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조·제4조의 제목 및 제4조제2항 본문중 “오수처리시설등”을 각각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규칙제30조제1항, 제59조”를 “규칙제33조제1항”으로 하고,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등”이라 한다)”를 “정화조(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를 “스킵(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펀, 플

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동조제3항·동조제4항·제9조제1항·제10조제1항 및 제3항·제11조·
제17조제1항 및 별표3의 “오수처리시설등”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법제58조제2항제6호”를 “법 제80조제3항”로 한다.

제4조제3항·제17조 제목과 제1항·제2항중 “정화조 청소업자”를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한다.

제6조중 “법제18조제1항”을 “법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중 “법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를 “법제41조제2항 및 규칙제37
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법제18조제3항”을 “법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법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을 “법제41조제1항”으로 하고,
“분뇨 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중 “청소업자”를 “대행업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법제18조제4항”을 “법제41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제10조제3항중 “분뇨등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를 “분뇨수
집·운반업자”로 한다.

제11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오수·분뇨”로 한다.

제15조의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동조제2

호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동법시행규칙제15조, 제21조 및 제53조"를 "동법시행령 제 24조제3항"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법제58조제3항"을 "법제80조제5항"으로 하고,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별표3중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을 각각 "「하수도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및 제7호 서식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규칙제30조제1항,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이상 실시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p>	<p>제명 : <u>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하여 「하수도법」 -----</p> <p>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 ----- 개인하수처리시설-----</p> <p>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① ----- 규칙제33조제1항----- ----- 정화조(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p> <p>② ----- 개인하수처리시설----- ----- 스쿰(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지역별 7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 법 제41조제1항-----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 분뇨수집의무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 법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1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①----- 법 제41조제3항-----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 법제41조제1항 -----
----- 개인하수처리시설 -----
----- 분뇨수집 -----
----- ·운반업자-----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 대 -----
----- 행업자-----

현행

개정안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생략)
2.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생략)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를 분뇨동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략)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 법제41조제4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1. (현행과 같음)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운반업자-----
----- 대행업자-----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 및 분뇨-----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
각 호의 어느 하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17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 정화조 청소업자는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21조 및 제5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p> <p>②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 분뇨 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 ----- -----</p> <p>② 분뇨수집·운반업자----- ----- -----</p>
<p>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제58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징수결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p> <p>② ~ ⑤ (생략)</p> <p>⑥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외의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p>	<p>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제80 조제5항-----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부과징수 규칙」-----</p>

현 행

[별표 3]

분뇨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 청소수
 수료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 노	기본	400ℓ	10,000	
	초과	10ℓ당	150	
오수처리 시설 단독정 화조 및 축 산폐수배출 시설	기본	0.75㎡	18,810	
	초과	0.1㎡	1,430	
사실	지하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0%	
	야간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0%	

비고(생략)

개 정 안

[별표 3]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
 수료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개 인 하 수 처 리 사 실	기본			현행과 같음
	초과			

비고(현행과 같음)

현 행

<별지 제2호 서식>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필증

신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수집 · 운반 대상	소재지			
	물 량			
	종 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필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마포구청장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필증

신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수집 · 운반 대상	소재지			
	물 량			
	종 류			

「하수도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필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마포구청장 귀하

현 행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오수분 노획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오수분 노획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인)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③ 주소			
과태료 처분 내역	④ 부과기간	⑤ 납부통지서 번 호		④ 부과기간	⑤ 납부통지서 번 호		
	⑥ 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⑥ 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 과태료 처분 사유			⑧ 과태료 처분 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u>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치리에관한법률</u>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 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 니 <u>비송사건절차법</u>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마 포 구 청 장 귀 하</p>				<p style="text-align: center;"><u>「하수도법」</u> 제 조 제 항의 규 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 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u>「비송사건절차법」</u> 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마 포 구 청 장 귀 하</p>			

현 행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수 신 :

발 신 : 마 포 구 청 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통보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와 관련하여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통보합니다.

과 태 료 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고자일자		⑤ 과 태 료 금 액	
	⑥ 부과기간		⑦이의제기 일 자	

-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담당 공무원 의견서 1부. 끝

개 정 안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수 신 :

발 신 : 마 포 구 청 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통보

1. 「하수도법」 제 조와 관련하여
2.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통보합니다.

과 태 료 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고자일자		⑤ 과 태 료 금 액	
	⑥ 부과기간		⑦이의제기 일 자	

-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담당 공무원 의견서 1부. 끝